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9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주철현 · 이주희
정을호 · 백승아 · 이광희
민형배 · 김남근 · 김우영
민병덕 · 최혁진 · 허성무
한창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, 선거구,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「공직선거법」을 준용하고 있음.

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「공직선거법」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,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.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.

이에 「공직선거법」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(안 제4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 전단 중 “제82조의7까지”를 “제82조의8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